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
람

기관장

제1073호 2015. 3. 4.(수)

차 례

조 례

-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46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 ----- 1

[별표]

검단복지회관 사용료(제6조와 관련)

1. 시설사용료

(단위 : 원)

시설명	구분	기준	사 용 료		비 고
			공연(영화)	행사	
가. 대강당		오전	30,000	45,000	○ 오전 (09:00~13:00) 오후 (13:00~18:00) 야간 (18:00~22:00) ○ 공연 및 행사당일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%로 함 ○ 토요일 오후 및 야간, 공휴일은 당해 기준 사용료의 20%를 가산함
		오후	45,000	65,000	
		야간	70,000	90,000	
나. 세미나실		1회	30,000		○ 당초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한 경우, 1시간미만은 20%, 2시간미만은 50%, 2시간이상은 다음회의 100%를 추가징수 ○ 익일의 공연이나 행사준비를 위하여 22:00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사용료의 50%로 함. ○ 1회라 함은 오전, 오후, 야간중의 하나를 말함
다. 체육관	1시간	2층	9,000		
		3층	6,000		

2. 부속설비 사용료

(단위 : 원)

부속설비		구 분	기 준	사 용 료	비 고
피 아 노			1대/1회	20,000	○ 조명연출을 필요로 하는 조명에 대해서만 조명료를 징수 ○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○ 1회라 함은 오전, 오후,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함 ○ 공연 및 행사당일연습을 위한 사용시에는 사용료의 50%로 함
음향	마이크 (설비포함)		기본 3개 추가 1개당	10,000 3,000	
	W/L (설비포함)		1일 1개	20,000	
	PIN (설비포함)		1일 1개	30,000	
	MR (AR, BGM)		1회	10,000	
	빔프로젝트		1회	20,000	
조 명			1 시간	20,000	
공 바 톤			1일 1개	10,000	

3. 냉·난방 사용료

(단위 : 원)

구 분	기 준	사 용 료	비 고
냉·난방 사용료	대강당	1시간	시설별 시간당 연료 (전기포함) 시가에 10%를 가산한 금액
	세미나실	1시간	
	체육관	1시간	

○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
○ 매시간 초과시 기준 요액의 20%를 가산한 금액

4. 교육수강료

○ 수강료 : 1시간 기준 4,000원 범위내(단, 교재비와 재료비는 별도)

5. 수영장, 헬스장 입장료

(단위 : 원)

구 분	기 준	금 액			비 고	
		성 인	중 · 고생	초등생이하		
수영	강습 (월이용)	개인	<u>52,000</u>	<u>44,000</u>	<u>38,000</u>	○ 단체라 함은 20인이상이 동일 소속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자를 말함. ○ 월 회원이라 함은 1월을 단위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○ 1일에 1회만 출입하는 기준 금액임.
	자유이용 (월이용)	개인	42,000	33,000	28,000	
	1일이용	개인	<u>5,000</u>	<u>3,000</u>	<u>2,000</u>	
		단체	<u>4,000</u>	<u>2,500</u>	<u>1,500</u>	
헬스	월이용	개인	30,000	20,000		
	1일이용	개인	<u>4,000</u>	<u>2,000</u>		

【 비 고 】

○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물함사용료 월5,000원 범위내, 열쇠분실 교체료 7,000원, 회원카드재발급수수료 추가비용을 실비로 받을 수 있다.

○ 사용료의 할증

- 1) 토·일·공휴일은 사용료의 100분의 30범위 안에서 할증할 수 있다.
- 2) 특화 프로그램은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사용료 별표 제5호의 수영장, 헬스장 입장료 조항에도 불구하고 특성에 따라 강습료를 별도 산정하여 받을 수 있다.